

2023년도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자체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2023년도 (재)영동축제관광재단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3. 4. 17. ~ 4. 21.(5일간) / 2020. 3월부터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민원처리 실태 및 각종 시설공사 집행현황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17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17건 (주의 15건, 시정 2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2건 / 1,137,000원
- 신분상 조치 : 없음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17부. 끝.

주요 지적사항

[재]영동축제관광재단 감사결과 처분사항(총괄)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금액
총계	총 17건	주의 15 시정 2		회수 1,137,000원
1	◦ 성과급 지급 부적정	주의		
2	◦ 수의계약 체결 및 집행 부적정	주의		
3	◦ 용역계약 등 산출내역 작성 소홀	주의		
4	◦ 지출과목 부적정	주의		
5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주의		
6	◦ 회의 식비 및 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회수 186,600원
7	◦ 위임전결 규정사항 위반	주의		
8	◦ 각종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준공검사 소홀	주의		
9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주의		
10	◦ 직원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950,400원
11	◦ 신규직원 채용관련 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주의		
12	◦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미안내	주의		
13	◦ 불합리한 제한조건 적용 및 불필요한 자격조건 제시	주의		
14	◦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부적정	주의		
15	◦ 이사회 운영 부적정	주의		
16	◦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및 원청징수 미이행	주의		
17	◦ 관광안내사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주의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성과급 지급 부적정

【현 황】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현황

연도	경영평가 결과	지급률	지급총액 (기준액)	지급내역				비고
				성명	등급	지급률	실지급액(원)	
2020	다	120%		계			18,888,080	지급 총액 기준 산정
				A	라	-	미지급	
				B	가	21%	4,047,440	
				C	나	18%	3,469,240	
				D	나	15%	2,891,030	
				E	나	18%	3,469,240	
				F	나	18%	3,469,240	
				G	나	12%	1,541,890	
2021	B(다)	120%		계			17,338,800	
				H	나	120%	1,320,000	
				B	나	120%	3,786,600	
				C	가	130%	2,925,390	
				F	나	120%	2,426,160	
				E	가	130%	2,925,390	
				G	나	120%	2,538,120	
				I	다	110%	675,810	
				D	-	-	미지급	
J	다	110%	741,330					
2022	C(라)	90%		계			19,012,270	
				H	라	80	2,744,000	
				B	마	70	2,298,270	
				C	나	100	2,712,280	
				F	나	100	2,359,700	
				E	다	90	2,425,730	
				G	가	110	2,802,870	
				I	라	80	1,615,370	
				J	다	90	2,054,050	

【위법부당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총액을 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고 지급하되, 최고-최저 등급 간 지급률의 차이는 50%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하여야 하며, 지급액은 연봉(보수)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 그런데, (재)영동축제공관재단에서(이하 “재단” 이라고 함)는 2020년도 성과급 지급 시 지급액 산정을 개인 연봉(보수)월액이 아닌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규정에 맞지 않게 책정하였으며, 2021년도 성과급의 경우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를 20%로 책정하였으며, 2022년도 성과급의 경우에도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 차이를 40%로 책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음.
- 아울러 영동군수가 결정한 지급률에 따라 성과급 지급 총액을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였어야 했으나, 2021년도 및 2022년도 성과급 지급 계획(안) 수립 시 성과급 지급 총액에 대한 결정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공관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수의계약 체결 및 집행 부적정

【현 황】

○ 수의계약 체결 현황 - 1

계 약 명	계획서 상 구입내역	실 구입내역	비고
2023 영동곶감축제 홍보물(포스터 및 리플릿 등) 제작	- 포스터 (5,000원 × 200부 = 1,000,000원) - 리플릿 (330원 × 15,000부 = 4,950,000원)	- 포스터 (3,000원 × 500부 = 1,500,000원) - 리플릿 (300원 × 15,000부 = 4,500,000원)	
2023 영동곶감축제 감말랭이 구입	- 감말랭이(500g ~ 600g) (296개, 단가 상이, 2,066,500원)	- 감말랭이(동성농원, 중량 미기재) (7,000원 × 50개 = 350,000원) - 감말랭이(봉구네농산, 중량 미기재) (7,500원 × 35개 = 262,500원) - 감말랭이(봉봉농산, 중량 미기재) (10,000원 × 47개 = 470,000원) - 감말랭이(하늘..농원, 중량 미기재) (6,000원 × 164개 = 984,000원)	

○ 수의계약 체결 현황 - 2

계 약 명	계약일	계 약 자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사업자등록증 발행 일자	비 고
제53회 영동○○○○○○○ ○○장 전기순환차량 및 공연섭외 계약	2022.10.5.	○○○○○ (대표 □□□)	제조업, 출판, 도·소매업	2022.12.10.	

【위법부당사항】

○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등은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금액 등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대가 지급 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을 확인해야 함.

- 그런데 재단에서는 “2023 영동곶감축제 홍보물(포스터 및 리플릿 등)제작” 과 관련하여 계획서 상 단가 및 수량을 **【현 황】** 과 같이 책정하였음에도 실 구입 시에는 계획과 다른 단가 및 수량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였으며, “2023 영동곶감축제 감말랭이 구입” 건에서는 같은 품목의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단가를 최대 66% 차이가 나게 책정함은 물론, 실제 납품서에는 중량이 미기재되어, 계획서상 구입예정 중량에 맞는 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2022년 10월 5일에 체결한 “제53회 영동○○○○○○○○ ○○장 전기순환차량 및 공연 섭외 계약” 건의 경우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할 사업자등록증의 발행일자가 2022년 12월 10일로 되어 있으며,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임대업 및 서비스업이 아닌 과업과는 무관한 제조업 등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용역계약 등 산출내역 작성 소홀

【현 황】

○ 2021. 온라인 영동○○○○○ 행사 운영 용역 계약

산출내역서(일부 재구성)				
내역	일	수 량	단가	금액
○○○ ○○○ 구성(무대세트, 목작업/TV 등 소품)	1	2	10,000,000	20,000,000
○○○ ○○○ 구성(음향 시스템 일체/오퍼레이터 포함)	5	1	1,000,000	5,000,000
○○○ ○○○ 구성(조명 시스템 일체/오퍼레이터 포함)	5	1	1,000,000	5,000,000
○○○○ 로고송 및 ○○○○ 제작	1	1	10,000,000	10,000,000
유명○○ ○○쇼	1	1	10,000,000	10,000,000
축제 ○○○○ 제작	1	1	8,000,000	8,000,000

○ 2021. 영동○○○○○ 행사 운영 용역 계약

산출내역서(일부 재구성)				
세부내용	단위	수 량	단가	최종협상
○○○○○○○○백월 및 ○○○○○ 일체	식	1	10,000,000	10,000,000
○○○○○○○○ 및 ○○○(변경 : 1명)	명	2	8,000,000	8,000,000
지역방송○○○(케이블방송)(수수료 0%)(192회 방송)	식	1	20,000,000	20,000,000

○ 2022. 영동○○○○○ 행사 운영 용역 계약

산출내역서(일부 재구성)				
내역	단위	수 량	단가	예산(안)
40평형 ○○ ○○○ 일체	식	1	5,500,000	5,500,000
메인무대 ○○○○○ 일체	식	1	5,500,000	5,500,000
메인무대 ○○○○○ 일체	식	1	5,500,000	5,500,000
○○○○○○○○○ 설치 일체	식	1	5,500,000	5,500,000
K-POP ○○○○(6~8팀 내외)	식	1	30,000,000	30,000,000
○○전시관(농업기술센터)	식	1	13,000,000	13,000,000
○○○○ 임대 운영비	식	1	20,000,000	20,000,000
○○○ 임대비	식	1	30,000,000	30,000,000
홍보용 ○○ ○○ 운영(홍보, 시식 등)	식	1	15,000,000	15,000,00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필요 시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 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 재단은 【현 황】과 같이 2021. 온라인 영동○○○○ 행사 운영 용역 외 2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산출내역서 상 ‘일체’ 또는 ‘1식’의 형태로 기재된 내역은 가격의 적정성 등의 확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는 등 계약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위 【현 황】은 재단이 체결한 계약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현 황】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계약에 있어서도 산출내역서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출과목 부적정

【현 황】

○ 지출현황

제 목	구매물품	부적정 지출과목	적정 지출과목
2020. 0000 음향 및 촬영장비 구매	스피커 외 6종	행사홍보비	자산취득비

【위법부당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행사홍보비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행사관련 임시적·일회성 시설물의 설치, 광고료 등의 집행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는 사업용 기계장치인 스피커 등을 구입함에 있어 자산취득비가 아닌 2020. 풍류버스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구입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매입 내역

(단위:천원)

건 명	계약자	매입기준액	매입가 (a)	적정가격 (b)	차 액 (a-b)	비 고
계(4건)						
2022 영동○○○○ 행사대행 운영 용역	주○○○○○ □□□	213,922	5,100	4,860	240	과다매입
2022 영동○○○○ 사전 홍보물 구매	○○○○기획 □□□	13,500	310	180	130	과다매입
2022 영동○○○○ 홍보물(포스터,리플릿) 제작	○○○ □□□	7,000	150	90	60	과다매입
2022 영동○○○○ 근무복 제작	○○○○○○○ ○○ □□□	6,600	150	90	60	과다매입

【위법부당사항】

○ 지역개발채권(공채)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별표1』(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 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로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0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축제관광재단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22 영동○○○○○

행사대행 운영 용역> 외 3건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하는 등 지역개발채권 징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 186,6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의 식비 및 여비 집행 부적정

【현 황】

연도	건 명	인원수	지출금액	적정지출액	초과지출액	비고
2020	제40차 이사회 회의 식대 지급	24명	336,000원	192,000원	114,000원	
2022	2022(재)영동축제관광재단축제팀 선진지 견학	3명	452,600원	266,000원	186,600원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3」 세출예산 성질 별분류에 따른 세부집행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또한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여비규정」 제12조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이 국내에 출장할 때의 각종 비용은 「별표 1」의 국내 출장여비 지급 기준에 따르고, 상세내용은 일비는 1일당 20,000원, 숙박비는 1박당 50,000원(서울 및 광역시 외 지역), 식비는 1일당 20,000원, 입장료(참가비)는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그런데 축제관광재단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제40차 이사회 회의 식대 지급> 건에 대하여 식대비를 지출함에 있어 공무원 지급 매식비 기준을 적용 1인당 8,000원 지급하여야 하나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22영동축제 관광재단 축제팀 선진지 견학> 건에

대하여는 식비 120,000원(20,000원×3명×2일)과 숙박비 140,000원, 체험비 6,000원을 합한 266,000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452,600원을 지급하여 186,6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시고, 과다 지급된 여비 186,6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위임전결 규정사항 위반

【현 황】

건 명	지출금액(천원)	위임전결 사항	결 재	비 고
2022 영동○○○○ 행사운영 용역 선급금 지급	213,922	이사장	상임이사	
영동○○○○ 대행 용역	215,078	이사장	상임이사	
제11회 ○○○○○○○○ 대행 용역	223,000	이사장	상임이사	

【위법부당사항】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위임전결 규정」에서는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의 업무능률 향상과 사무 처리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 위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제반업무 결재에 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별표」 공통사항에 따르면 예산 집행에 대하여 추정금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제조,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과 그 외의 것에 대하여는 이사장 결재사항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축제관광재단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22 영동○○○○ 행사운영 용역 선급금 지급>의 2건에 대하여, 재단 위임전결 규정상 이사장 결재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이사(양무웅)의 전결로 처리하는 등의 재단 위임전결 규정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공관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각종 공사·물품·용역에 대한 준공감사 소홀

【현 황】

건 명	도 급 액 (천원)	도 급 자	계 약 일	착 공 일	준 공 일	준공검사일	비 고
2022 영동○○○○ 옥외 광고물 제작 및 설치 용역	28,020	경현인쇄광고 이경숙	2022.08.05.	2022.08.05.	2022.08.25.	2022.09.19.	
제11회 ○○○○○○○○ 와인판매장 보수 용역	12,100	(주)한남 류호현	2022.10.05.	2022.10.05.	2022.10.09.	2022.11.22.	
제11회 ○○○○○○○○ 버스킹공연 및 체험 운영	18,480	(주)편에이블 장태호	2022.10.05.	2022.10.05.	2022.10.09.	2022.12.06.	
제11회 ○○○○○○○○ 시설물 설치 및 운영용역	11,000	(주)삼아미디어 주신영	2022.10.05.	2022.10.05.	2022.10.09.	2022.12.06.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축제관광재단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22 영동○○○○ 옥외광고물 제작 및 설치 용역>외 3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고시 제 2022-4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준공검사를 7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았음.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현 황】

건 명	도 급 액 (천원)	도 급 자	계 약 일 착 공 일 준 공 일	평가위원수	계약방법	비고
계(2건)						
제11회 ○○○○○○○○ 대행 용역	223,000	(주)○○○ □□□	'22.09.21. '22.09.21. '22.11.02.	7명	협상에 의한 계약	
2021 영동○○○○ 행사 대행 용역	118,790	(주)○○○○○ □□□	'21.07.30. '21.07.30. '21.09.10.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07호) 제5장 제4절에 따르면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하며,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 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도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평가결과 공개에 대하여는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 위원별 평가 결과의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하여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축제관광재단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제11회 ○○○○○○○○ ○○ 대행 용역>외 1건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평가위원구성 시 관계자가 포함하여 구성하였고,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없이(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후 추첨하여야 함) 평가위원을 구성하였음. 또한 평가결과 공개(세부평가 점수 및 평가 위원 명단 등)에 대한 규정도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 950,40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직원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 연차수당 부적정 지급내역

(단위 : 일, 원)

지급 연도	지급 대상	미사용 연차	보상 일수	지급 금액	적정 지급액	차액	비고 (기본급)
계	18건	76	86			950,400	
2020	H	4.25	5	631,580	536,850	94,730	3,300,000
	C	8.375	9	775,230	721,390	53,840	2,250,300
	D	2.25	3	258,410	193,810	64,600	2,250,300
	J	1.625	2	154,780	120,100	34,680	1,930,700
	E	3.625	4	344,550	312,250	32,300	2,250,300
	G	6.125	7	566,730	495,890	70,840	2,115,100
	I	3.5	4	282,200	246,930	35,270	1,843,100
2021	H	6.25	7	884,220	789,480	94,740	3,300,000
	C	7.125	8	727,400	647,840	79,560	2,375,400
	E	0.375	1	90,930	34,100	56,830	2,375,400
	I	1.875	2	149,310	139,980	9,330	1,950,300
	J	0.125	1	81,790	10,230	71,560	2,136,600
2022	K	5.25	6	757,900	663,160	94,740	3,300,000
	C	10.75	11	1,060,430	1,036,330	24,100	2,518,500
	F	0.5	1	86,800	43,400	43,400	2,267,400
	E	2.625	3	289,210	253,060	36,150	2,518,500
	G	3.625	4	361,310	327,440	33,870	2,359,800
	L	7.75	8	635,560	615,700	19,860	2,075,500

【위법부당사항】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보수 규정」 제18조(연차휴가수당)에 따르면 직원 연차휴가는 재단 직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한 경력에 따라 계산하며, 연차휴가일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별표 3의 기준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일수] 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재)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는 연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급액은 미사용 연차 일 수만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나 1일 미만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임의대로 절상하여 1일로 보상하는 등 연차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함.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시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연차수당 950,4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신규직원 채용관련 심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현 황】

○ 2022년 직원 채용현황

연번	구분	채용구분	채용형태	공고일	직종	직급	선발예정 인원	접수 인원	최종발 인원
1	임기제	신규채용	공개채용	8.8	임기제	가급	1	1	1
2	계약직	신규채용	공개채용	5.23.	계약직	다급	1	3	1
3	기간제	신규채용	공개채용	6.22.	기간제		1	2	1

【위법부당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2021.1.29.) III. 직원의 인사, [4] 시험의 방법, 나. 시험위원의 임명에 의하면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국민권익위원회, 2020.10.) 제13조(전형위원) 제2항에서도 동일 채용 내에서 다른 전형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전형단계별 공정채용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중복 위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재)영동축제공관광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에서도 2022년에 계약직 다급 직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 위촉에 대하여는 1차 서류심사는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2차 면접심사는 인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5인으로 별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함.

- 그러나 실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이 서류전형 단계와 면접 단계에서 중복으로 참여하였으며, 심지어 서류전형 단계에서는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직원 인사규정」 제9조(소집과 의결) 제2항에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시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 6명 중 3명만이 출석하여 위원회 의결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서류심사 의결을 하는 등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미안내

【현 황】

○ 직원 합격자 공고 현황

연번	공고명	공고번호	합격자 공고방법	공고일	비고
1	2020년 재)영동축제관광재단 계약직 직원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후보자 등록안내	제2020-7호	홈페이지, 개별통보	20.8.14.	
2	2022년 재)영동축제관광재단 계약직 직원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후보자 등록안내	제2022-10호	홈페이지, 개별통보	22.6.21.	
3	재)영동축제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제2022-14호	홈페이지, 개별통보	22.7.12.	
4	2022년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임기제 직원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후보자 등록안내	제2022-26호	홈페이지, 개별통보	22.8.25.	
5	재)영동축제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제2023-4호	홈페이지, 개별통보	23.3.29.	

【위법부당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2021.1.29.) III. 직원의 인사, [4] 시험의 방법, 가. 시험의 방법에 따르면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재)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는 [현황]과 같이 2020~2022년 기간 중 총 4명의 임기제, 계약직, 기간제 직원을 채용 하면서 합격자 공고문 상에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불합격자에 대한 구제제도 안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불합리한 제한조건 적용 및 불필요한 자격조건 제시

【현 황】

- 재)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는 계약직 직원(팀원) 채용을 위하여 2022. 5.13.~5.26.기간 중 직원 채용공고를 하였으며, 채용자격기준은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며 이 밖에 채용공고 상 채용자격 공통요건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계약직 직원 채용자격 공통요건

직위	채용자격기준
공통요건	- 2종 보통(자동)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 남자의 경우 군 복무(면접일 전 전역예정자)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기준 1년 미만 남은 자 제외

【위법부당사항】

- 「기타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국민권익위원회, 2020.10.) 제4조(채용원칙)에 따르면 기관은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재)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는 상기와 같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규직 직원의 정년연령을 반영하여 연령제한을 두었으며, 사무직 직원 채용임에도 운전면허증 소지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하여 서류전형에서 연령조건에 미달한 1명을 부적격 처리하였으며,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등 신규직원 채용 시 불합리한 자격조건을 제시함.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공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부적정

【현 황】

- 재)영동축제공관재단에서는 재단 업무보조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모집하였으며, 공고 및 채용현황은 [표2]와 같음

[표2] 기간제 직원 공고 및 채용현황

구분	공고	재공고	재공고 3차	비고
공고기간	22.5.13.~5.26.	22.6.2.~6.13.	22.6.22.~6.30.	
자격기준 (필수요건)	- 만19세 이상, 영동군 거주 - (남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컴퓨터 활용능력(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MOS, ITQ, E-test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19세 이상, 영동군 거주 - (남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컴퓨터 활용능력(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MOS, ITQ, E-test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타 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만19세 이상, 영동군 거주 - (남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 기타 임용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시자	2명	0명	1명	
최종결과	자격증 미소지로 전원 서류심사 불합격	응시자 없음	응시자 최종 합격	

【위법부당사항】

-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행정안전부, 2021.1.29.) III. 직원의 인사, [3] 채용시험의 공고에서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에, (재)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면서 1차 공고 시 최종 선발자 없음, 재공고 시 응시자 없음으로 다시 공고 하면서 [표2]와 같이 채용 자격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공고가 아닌 재공고 3차로 공고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동일 공고내용으로 보이게 하는 등 채용공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사회 운영 부적정

【현 황】

○ 이사회 서면의결 현황

연도	차수	일자	의안내용	의결방법	비고
2020	제39차	2020.03.27.	◆ 2019년 세입·세출 회계감사 결과 승인(안)	서면	
2021	제46차	2021.03.30.	◆ 2020년 세입·세출 회계감사 결과 승인(안)	서면	
	제47차	2021.06.10.	◆ 202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서면	
	제48차	2021.07.30.	◆ 2021 영동포도축제 개최방식 심의	서면	
	제51차	2021.12.28.	◆ 2021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1년도 사업 명시이월 예산(안) ◆ 소송 사무처리 규정 신설(안)	서면	
2022	제53차	2022.03.11.	◆ 2021년 세입·세출 회계감사 결과 승인(안)	서면	

【위법부당사항】

-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 및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회 운영규정」(이하 ‘이사회 운영규정’ 이라 한다)에 따르면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이사회는 이사장의 소집으로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정관의 변경 등 이사회에서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17조(의결 정족수 등)에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함.
- 그러나, 재)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는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서면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현황]과 같이 이사회 소집을 생략하고 회계감사 결과, 추경예산안, 규정 제·개정에 대한 사항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로 진행함.

- 또한, 정관 제19조(의사록)에 이사회의 의결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1명과 감사 1명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한 이사회의 개최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았으며,
- 의사록의 사전적 개념은 ‘회의의 경과 및 결정 따위를 적어놓은 기록’ 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흔히 표현하는 회의록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의사록은 「민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에 의사록의 작성내용, 날인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회의록과 달리 좀 더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인과관계 및 사실관계 등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기록물로 회의록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재단 정관에는 의사록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사회 운영규정에는 의사록이 아닌 회의록으로 되어 있어 각 규정의 동일 내용에 대한 조항명의 통일이 필요함.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 및 원천징수 미이행

【현 황】

○ 위원회 지급단가 부적정 /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지급일자	내용	지급대상	총지급액	1인당 단가	비고
2020.08.20.	2020년 ○○○○ 수당 지급	○ ○ ○ 외 3명	1,120천원	280천원	
2020.12.01.	2021년 영동○○○○ 대행사 제 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심사비 지급	○ ○ ○ 외 6명	1,750천원	250천원	조달청 기준
2020.12.08.	제3기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 ○ 외 6명	980천원	140천원	
2021.07.14.	○○○○ 제안서 심사 평가 비 지급	○ ○ ○ 외 6명	1,750천원	250천원	조달청 기준
2021.08.26.	○○○○○○○ 제안서 심사위 원 심사비 지급	○ ○ ○ 외 6명	1,750천원	250천원	조달청 기준
2021.09.08.	○○○○ 대행사 제안서 심 사수당 지급	○ ○ ○ 외 6명	2,100천원	300천원	조달청 기준
2021.11.25.	2022년 영동○○○○ 대행사 제 안서 심사평가위원 참석자 수당	○ ○ ○ 외 6명	1,750천원	250천원	조달청 기준
2022.06.14.	2022년 영동○○○○ 대행사 제 안서 심사평가위원 참석자 수당	○ ○ ○ 외 6명	2,100천원	300천원	조달청 기준
2022.08.12.	제53회 영동○○○○○○○ 대행사 제안서 심사평가위원 참석자 수당	○ ○ ○ 외 5명	1,500천원	250천원	조달청 기준
2022.08.19.	제11회 ○○○○○○○○ 대행사 제안서 심사평가위원 참석자 수당	○ ○ ○ 외 6명	2,100천원	300천원	조달청 기준
2022.12.13.	제4기 ○○○○위원회 참석수 당 지급	○ ○ ○ 외 6명	980천원	140천원	
2022.12.27.	2022년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 ○ 외 2명	420천원	140천원	

【위법부당사항】

-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II. 주요항목별 집행 지침, 나. 세부집행요령, 3) 운영수당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내부규정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세출 예산서에는 위원회별 참석수당이 1인당 7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밖에 지급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이 없어 「영동군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준용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 70천원이며, 2시간 초과 시에는 30천원을 추가지급 할 수 있음.

- 그러나, 재)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지급기준을 별도로 규정한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제외한 일반 위원회의 경우에는 최대 100천원 지급하여야 하나 2시간 초과한 위원회의 경우 40천원에서 180천원까지 초과 지급함.
- 또한, 「소득세법」 제21조에 기타소득의 정의를 보면 사례금(제1항 제17호) 및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제1항제19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 제129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20%에 해당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제85조, 제86조에 따라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어야 하나 원천징수 의무를 미이행함.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관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관광안내사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현 황】

○ 관광안내사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연도	지급대상	활동내용	총 지급액	비고
합계			241,199천원	
2020	○○○ 외 13명	안내소 근무, 투어 진행 등	47,159천원	3~5월 미운영
2021	○○○ 외 13명	안내소 근무, 투어 진행 등	74,130천원	
2022	○○○ 외 11명	안내소 근무, 투어 진행 등	96,180천원	
2023	○○○ 외 9명	안내소 근무, 투어 진행 등	23,730천원	1~3월

【위법부당사항】

○ 재)영동축제관광재단에서는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관광안내사를 양성하고 영동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홍보 및 안내, 투어 진행을 위해 연중 관광안내소(영동역), 와인터널 등에 관광안내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사 활동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상금 성격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 제21호 및 같은 법 제127(원천징수의무), 같은 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르면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및 같은 법 제89조(세율)에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 이에, 관광안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광안내사의 용역 제공에 따른 활동비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로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볼 수 없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재)영동축제공광재단에서는 매년 1월부터 12월 기간 중 근무하는 관광안내사에게 1일 평균 7만원 단가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41,199천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처분내용】

- (재)영동축제공광재단 상임이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